

# 채권추심자에 대한 권리

채권추심자가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 또는 문자를 보내거나 소셜 미디어로 연락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상황을 숨기거나 무시하여 없던 일이 되길 바랄 수도 있지만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첫째, 채권추심자와 채무가 합법인지 확인하세요.

다음 사항을 알아보세요.

- 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이름 확인)
- 채권추심업체명
- 채권추심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채권추심자에게 물어보세요.

- 갚아야 하는 금액
-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조직명
- 채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만약 채권추심자가 첫 통화 시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에게 돈을 갚기로 동의하거나 협상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서면 통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괴롭힘과 속임수는 불법입니다

연방공정책채권추심관행법(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연락하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억압하고 학대하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추심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에 전화하기
- 계속해서 전화하기
- 전화받는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학대하거나 괴롭히기 위해 반복적으로 전화하기
- 소셜 미디어 계정에 채무에 대한 메시지 게시 (발신자가 채권추심자라는 것을 밝히면 개인 메시지는 허용됨)
-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 사용
- 폭력 또는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
- 빚진 금액에 대해 거짓말하기
- 법 집행관이라고 허위로 주장하거나 빚을 갚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말하며 돈을 받기 위해 속이는 행위
- 부채 상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게시하는 행위(신용평가 회사에 보고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 채권추심업자라고 밝히지 않거나 가짜 회사명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는 행위

## 둘째, 채무를 확인하세요.

###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채권주심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채무가 맞더라도 채권주심자와 이야기하지 않거나 그만 연락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주심자에게 연락을 그만하고 해도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추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용평가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몇 년 된 경우

오래된 채무를 갚거나 상환 계획에 동의하기 전, 채권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에는 법적 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는 채권자 또는 채권주심자가 추심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해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채무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세요. 채권주심자에게 채무 금액, 채무가 본인의 것이라는 증거가 포함된 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의미입니다.

채무가 다른 업체로 이전되었고 이전된 업체에서 채권주심자를 통해 연락을 한 경우에는 원래의 대출 기관명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채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와 관련해 협상하고 싶지 않다면 채권주심자에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알리면 됩니다. 하지만

채권주심자나 대출기관에서는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추심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 셋째, 편지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추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받은 편지나 메시지를 모두 보관하고 편지 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사본을 만들어 보관해야 합니다.

## CFPB 답변 및 샘플 서식

CFPB 홈페이지([consumerfinance.gov/consumer-tools/debt-collection](http://consumerfinance.gov/consumer-tools/debt-collection))를 방문하여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 채권주심자에게 응답할 수 있는 샘플 서식, 주요 용어 및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보세요.

### 민원 접수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가요? 민원을 해당 회사에 전달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5 일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consumerfinance.gov/complaint](http://consumerfinance.gov/complaint)

#### ☞ 전화(180여 개 언어 지원)

월-금, 동부 시간 기준 오전 8시 - 오후 8시  
(855) 411-CFPB (2372)  
(855) 729-CFPB (2372) TTY/TDD

#### ▣ 우편

P.O. Box 27170  
Washington, DC 20038